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 2. 21.(수요일)입니다. (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가점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2. 21.)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 경기도(용인시外)에 거주하는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인터넷 청약 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

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65세 이상인 자 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성복동)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기간

- 용인시 성복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며,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8. 3. 19.)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lottecastle.co.kr***)를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 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는 84A, 84B, 116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외 타입은 모형 **등**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건축 관련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람 및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 – *0000*호*(2018. . .)*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 급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5-2*번지 외 *23*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동 총 *5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3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0*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대지면적 *:* *34,759.00*㎡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타입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2018000000- 01	84.9500	84A	84.9500	26.2887	111.2387	37.7448	148.9835	55.0567	153	11
	2018000000- 02	84.9100	84B	84.9100	26.9792	111.8892	37.7271	149.6163	55.0308	188	9
	2018000000- 03	101.9400	101A	101.9400	32.0964	134.0364	45.2939	179.3303	66.0680	93	5
	2018000000- 04	101.8200	101B	101.8200	32.2780	134.0980	45.2405	179.3385	65.9902	16	1
	2018000000- 05	116.9300	116	116.9300	34.6700	151.6000	51.9542	203.5542	75.7831	72	4
	2018000000- 06	134.2100	134	134.2100	41.0365	175.2465	59.6320	234.8785	86.9824	2	
	2018000000- 07	192.3800	192	192.3800	63.2766	255.6566	85.4780	341.1346	124.6828	3	
	2018000000- 08	193.9100	193	193.9100	63.3593	257.2693	86.1578	343.4271	125.6744	1	
	2018000000- 09	197.5200	197	197.5200	63.7251	261.2451	87.7618	349.0069	128.0141	2	
	2018000000- 10	219.1900	219	219.1900	69.8923	289.0823	97.3902	386.4725	142.0586	2	
	2018000000- 11	234.6500	234	234.6500	72.1573	306.8073	104.2594	411.0667	152.0783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천원)

주택형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후 30일내	2018.07.20.	2018.10.20.	2019.01.20.	2019.05.20.	2019.09.20.	2020.01.20.	입주지정일
84.9500 (84A)	101동 2호 102동 1,2호 103동 3,4호 104동 2호 105동 3호 106동 3호 107동 2호	1층	9	296,056	278,944		575,000	10,000	47,500	57,500	57,500	57,500	57,500	57,500	57,500	172,500
		2층	9	296,056	284,944		581,000	10,000	48,1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174,300
		3층	9	296,056	290,944		587,000	10,000	48,700	58,700	58,700	58,700	58,700	58,700	58,700	176,100
		4층	9	296,056	308,944		605,000	10,000	50,500	60,500	60,500	60,500	60,500	60,500	60,500	181,500
		5층이상	117	296,056	314,944		611,000	10,000	51,100	61,100	61,100	61,100	61,100	61,100	61,100	183,300
84.9100 (84B)	101동 1호 103동 1,2호 104동 1,3,4호 105동 1,2호 106동 1,2호 107동 1호	1층	10	297,787	269,213		567,000	10,000	46,700	56,700	56,700	56,700	56,700	56,700	56,700	170,100
		2층	11	297,787	275,213		573,000	10,000	47,300	57,300	57,300	57,300	57,300	57,300	57,300	171,900
		3층	11	297,787	281,213		579,000	10,000	47,900	57,900	57,900	57,900	57,900	57,900	57,900	173,700
		4층	11	297,787	299,213		597,000	10,000	49,700	59,700	59,700	59,700	59,700	59,700	59,700	179,100
		5층이상	145	297,787	305,213		603,000	10,000	50,300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180,900
101.9400 (101A)	101동3,4호 102동3호 107동3,4호	1층	5	356,731	275,699	27,570	660,000	10,000	56,000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198,000
		2층	5	356,731	282,063	28,206	667,000	10,000	56,700	66,700	66,700	66,700	66,700	66,700	66,700	200,100
		3층	5	356,731	288,426	28,843	674,000	10,000	57,400	67,400	67,400	67,400	67,400	67,400	67,400	202,200
		4층	5	356,731	307,517	30,752	695,000	10,000	59,500	69,500	69,500	69,500	69,500	69,500	69,500	208,500
		5층이상	73	356,731	313,881	31,388	702,000	10,000	60,200	70,200	70,200	70,200	70,200	70,200	70,200	210,600
101.8200 (101B)	102동 4호	2층	1	356,895	269,186	26,919	653,000	10,000	55,300	65,300	65,300	65,300	65,300	65,300	65,300	195,900
		3층	1	356,895	275,550	27,555	660,000	10,000	56,000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198,000
		4층	1	356,895	294,641	29,464	681,000	10,000	58,100	68,100	68,100	68,100	68,100	68,100	68,100	204,300
		5층이상	13	356,895	301,005	30,100	688,000	10,000	58,800	68,800	68,800	68,800	68,800	68,800	68,800	206,400
116.9300 (116)	108동 1,2,3,4호	1층	4	403,475	304,114	30,411	738,000	10,000	63,800	73,800	73,800	73,800	73,800	73,800	73,800	221,400
		2층	4	403,475	311,386	31,139	746,000	10,000	64,600	74,600	74,600	74,600	74,600	74,600	74,600	223,800
		3층	4	403,475	318,659	31,866	754,000	10,000	65,400	75,400	75,400	75,400	75,400	75,400	75,400	226,200
		4층	4	403,475	339,568	33,957	777,000	10,000	67,700	77,700	77,700	77,700	77,700	77,700	77,700	233,100
		5층이상	56	403,475	346,841	34,684	785,000	10,000	68,500	78,500	78,500	78,500	78,500	78,500	78,500	235,500

134.2100 (134)	103동1,2호PH 104동3,4호PH	16층, 18층	2	466,409	1,040,537	104,054	1,611,000	10,000	151,100	161,100	161,100	161,100	161,100	161,100	161,100	483,300
192.3800 (192)	101동1,2호PH 104동1,2호PH 107동1,2호PH	18층, 20층	3	680,417	1,517,803	151,780	2,350,000	10,000	225,000	235,000	235,000	235,000	235,000	235,000	235,000	705,000
193.9100 (193)	102동3,4호PH	18층	1	684,709	1,527,537	152,754	2,365,000	10,000	226,500	236,500	236,500	236,500	236,500	236,500	236,500	709,500
197.5200 (197)	102동1,2호PH 103동3,4호PH	16층	2	695,290	1,550,645	155,065	2,401,000	10,000	230,100	240,100	240,100	240,100	240,100	240,100	240,100	720,300
219.1900 (219)	101동3,4호PH 107동3,4호PH	20층	2	769,377	1,716,021	171,602	2,657,000	10,000	255,700	265,700	265,700	265,700	265,700	265,700	265,700	797,100
234.6500 (234)	108동1,2호PH 108동3,4호PH	18층, 20층	2	816,552	1,821,316	182,132	2,820,000	10,000	272,000	282,000	282,000	282,000	282,000	282,000	282,000	846,000

▣ 공통 유의 사항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는 총 30세대로 1층에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층으로 간주하여 층과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각 동호별 필로티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대출개시일로부터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대출이자를 대납하되, 분양계약자는 잔금 지급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며, 최초입주개시일부터는 분양계약자가 직접 중도금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2회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500	84.9100	101.9400	101.8200	116.9300	134.2100	192.3800	193.9100	197.5200	219.1900	234.6500
약식표기	84A	84B	101A	101B	116	134	192	193	197	219	23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의 별표2)

구 분 (전용면적 기준)	예치금액			해당형 (타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4A, 84B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1A, 101B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16, 134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전평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합니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미계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 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면적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장소	청약접수 일시	당첨자 발표	계약일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견본주택	2018.02.26(월) 10:00~14:00	2018.02.26(월) 17:00 이후 (견본주택)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함.

■ **특별 공급 세대수**

구 분		84A	84B	101A	101B	116	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15	18	-	-	-	3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0조)	경기도거주자(50%)	7	9	4	1	3	24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거주자(50%)	7	9	4	1	3	24
	소계	14	18	8	2	6	48
신혼부부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1조)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		15	18	-	-	-	33
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6조)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		4	5	2	-	2	13
계		48	59	10	2	8	12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3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은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등 기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4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 및 태아도 포함하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65	-	-	
미성년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및 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이상	10	·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기타 관련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3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 * (N- 5) } ※ N→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3항 각 호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재혼인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국민연금 미가입시)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 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기타 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세대 : 총 1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 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합니다.(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관련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

					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의 경우 재직증명서(복무사실확인서)
다자녀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접수 장소에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에 혼인 신고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접수 장소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에 혼인 신고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용인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조정대상주택의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약 및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재당첨제한, 1순위제한 등) 중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기간에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 분 (전용면적 기준)	예치금액			해당형 (타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4A, 84B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1A, 101B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16, 134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전평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할 경우 청약신청 당일까지 규모선택이 가능하나, 규모를 이미 선택한 경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 이후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 전보다 큰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및 일정**

순위	구분	신청 자격	접수일자	장소/시간	당첨자 발표
1순위	85㎡ 이하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018. 02.27.(화)	- 국민은행 외 : www.apt2you.com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접수 시간 : 08 : 00 ~ 17 : 30	일시 : 2018.03.07.(수) • 확인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85㎡ 초과	· 추첨제(100%)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2순위	전주택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2018. 02.28.(수)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2순위는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은행, 수협, NH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방법**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하되,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합니다.
- 각 주택형 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전세대 추첨제로 공급합니다.(2017. 11. 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85㎡이하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조건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되며,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 청약통장 가입자(1순위) 또는 거래계좌 보유자(2순위)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1순위) 또는 거래계좌 보유자(2순위)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전체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인터넷 청약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노약자·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포함)	· 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신청시 신청자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 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 점</th><th>가 점 구 분</th><th>점 수</th><th>가 점 구 분</th><th>점 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8">① 무주택 기간</td><td rowspan="8">32</td><td>1년미만 (무주택자에 한함)</td><td>2</td><td>8년이상~9년미만</td><td>18</td><td rowspan="8">-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td></tr>
<tr><td>1년이상~2년미만</td><td>4</td><td>9년이상~10년미만</td><td>20</td></tr>
<tr><td>2년이상~3년미만</td><td>6</td><td>10년이상~11년미만</td><td>22</td></tr>
<tr><td>3년이상~4년미만</td><td>8</td><td>11년이상~12년미만</td><td>24</td></tr>
<tr><td>4년이상~5년미만</td><td>10</td><td>12년이상~13년미만</td><td>26</td></tr>
<tr><td>5년이상~6년미만</td><td>12</td><td>13년이상~14년미만</td><td>28</td></tr>
<tr><td>6년이상~7년미만</td><td>14</td><td>14년이상~15년미만</td><td>30</td></tr>
<tr><td>7년이상~8년미만</td><td>16</td><td>15년이상</td><td>32</td></tr>
</table>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 산정,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이상~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1년미만	2	9년이상~10년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3	10년이상~11년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4	11년이상~12년미만	13	
		3년이상~4년미만	5	12년이상~13년미만	14	
		4년이상~5년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15	
		5년이상~6년미만	7	14년이상~15년미만	16	
		6년이상~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8년미만	9	-	-	
계	84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무주택 적용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부양가족수의 인정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합니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합니다.)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위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 일시 : 2018.02.26.(월) 17:00 · 장소 : 당사 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일시 : 2018.03.07.(수)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당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	· 일시 : 2018.03.19.(월) - 2018.03.21.(수) (10:00 ~ 16:00)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일반공급	· 2018.03.07.(수)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예비 당첨자 포함)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결제원 (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03.07.(수) ~ 2018.03.18.(일) (12일간)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접속→KB부동산→주택청약→당첨확인
전화(ARS)		ARS 1369 (서비스코드 : 5#)	국민은행 콜센터 1588- 9999 (서비스코드 :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3.07.(수)(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당첨자는 문자메세지 전송 가능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 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산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에 아래 금융기관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비고란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 - 01011001홍길동)
· 계약금 납부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 012- 115737	대한토지신탁(주)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
		O		계약금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주택공급 신청서	·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O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거주기간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노부모부양		O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O		혼인관계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다자녀 가구		O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서류	· 태아 포함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O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 재당첨제한 등 당첨사실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 서류
			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O		위임장	· 접수 장소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O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등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단, 착오기재한 청약가점항목 확인결과 최종 가점점수가 해당 주택형 당첨최저 가점점수 이상인 경우 당첨자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행정구역, 단지 및 단지 내의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입주예정자에 대한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사용검사일 기준 약 1~2개월 이전 예정)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2020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문고, 휴게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체력단련실,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면적: ㎡, 금액: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84A	84B	101A	101B	116	134	192	193	197	219	234
발코니 확장금액	29,539	26,591	30,870	30,761	36,906	41,873	36,370	64,742	43,736	66,646	58,350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납부계좌,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 012- 115737(변경 예정)	대한토지신탁(주)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골조 및 마감비용, 이중단열창 설치비용, 가구비용)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선택 시 발코니 이중창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포함사항은 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일정은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일정은 계약자 본인에게 고지할 예정임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 상 내실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제공되는 상품이 기본형에 비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을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님)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시기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1		선택2	
	적용	금액	적용	금액
84A	거실 + 주방 + 안방	5,85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2)	10,090,000
84B	거실 + 주방 + 안방	5,83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2)	9,940,000
101A	거실 + 주방 + 안방	6,50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1,510,000
101B	거실 + 주방 + 안방	6,58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2,030,000
116	거실 + 주방 + 안방	6,80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2,550,000
134	거실 + 주방 + 안방	8,22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4,640,000
192	거실 + 주방 + 안방	8,22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4,640,000
193	거실 + 주방 + 안방	8,22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4,640,000
197	거실 + 주방 + 안방	8,22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4,640,000
219	거실 + 주방 + 안방	8,22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4,640,000
234	거실 + 주방 + 안방	8,220,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3)	14,64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 및 에어컨실외기용 전기콘센트 설치 공사를 제외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 안방 매립냉매배관(벽부형)은 시공되지 않음(미선택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도 설치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기타 가전제품 공급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삼성 RS674CHQFSR	전 주택형	5,160,000	
빌트인 김치 냉장고	삼성 RQ22K5R(L)01EC	전 주택형	1,510,000	
하이브리드 쿡탑	쿠첸 CIR- S3210	전 주택형	510,000	
음식물처리기	지비앤디 DA- 100	전 주택형	650,000	

▣ 붙박이 가구 공급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타입)	금액
현관중문	전 타입	1,120,000
펜트리 (창고,선반,도어) + 복도장	84A	2,920,000
펜트리 (창고, 선반, 도어)	101A	2,920,000
	84B, 101B	2,170,000
	116, 134, 192, 193, 197, 219, 234	3,170,000
스터디룸(침실2)	전 타입	2,890,000
안방 붙박이장	84A, 84B, 101A, 101B	3,770,000
	116, 134, 192, 193, 197, 219, 234	4,170,000
침실1 붙박이장	전 타입	1,220,000
주방 상판, 벽 엔지니어스톤 적용	84A, 84B, 101A, 101B	1,850,000
	116, 134, 192, 193, 197, 219, 234	2,280,000
주방 상부장 사틴유리 적용	84A, 84B, 101A, 101B	1,290,000
	116, 134, 192, 193, 197, 219, 234	1,610,000

▣ 기타 마감 공급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타입)	금액
현관바닥 고급화 (석재타일)	전 타입	34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안방욕실)	전 타입	470,000
현관 아트월 고급화 (석재)	전 타입	550,000

구 분		84A	84B	101A	101B	116	134	192	193	197	219	234
거실,주방 바닥 고급화	원목마루	5,830,000	5,830,000	6,550,000	6,550,000	7,260,000	8,520,000	10,310,000	10,310,000	10,310,000	12,100,000	12,100,000
	원목마루+ 폴리싱타일	4,950,000	4,950,000	5,850,000	5,850,000	6,320,000	8,310,000	10,110,000	10,110,000	10,110,000	11,900,000	11,90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및 잔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 012- 115737(변경 예정)	대한토지신탁(주)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유의 사항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납부금액은 추후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일정은 계약자 본인에게 고지할 예정임
· 일부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일정은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주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현관중문의 경우 도어 및 손잡이의 컬러,디테일,세부사양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벽체(엔지니어드스톤)은 본공사시 시공이음이 발생될수 있음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관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구 분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설치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침실/주방/식당/복도바닥재,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바닥방수, 현관바닥, 발코니바닥(석재, 타일)
벽지	벽지(아트월, 타일, 도장 등 포함), 천장지(도장포함)	우물천장, 몰딩, 경량벽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등 제외)	욕실천장 조명기구, 배관, 배선(스위치 및 콘센트 등)
욕실	타일, 석재(바닥, 벽, 젠다이, 세면대상판 등), 욕실장, 샤워부스,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천장, 방수(바닥, 벽체), 바닥미장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설비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주방가구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기기류(가스쿡탑 등), 주방TV, 주방수전	후드,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포함), 수납장, 시스템선반	-
창호	창호(문틀, 문짝, 문선, 하드웨어포함)	가틀(세대내 창호부위), 커튼박스, 현관문, 발코니PL창호, 디지털도어락, 소방관련 방화문

▣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

(금액: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84A	84B	101A	101B	116	134	192	193	197	219	234
마이너스 옵션 공사비	26,423	26,573	32,925	33,038	36,688	40,849	59,593	59,969	60,896	67,385	71,516

※ 상기금액은 취득세 등 미포함 금액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주택형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으로 계약한 세대의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는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완료 이후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등으로 인하여 초기 설정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 공사를 완료한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공급신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2순위자 포함) 계약기간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지) 조치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이에 따른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달로그, 팜플렛 등) 및 분양 홈페이지 상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사진, 마감재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 및 인쇄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함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인쇄물(팜플렛, 카달로그 등)과 기타 홍보물 상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및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 및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조경컷,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구획선과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돌결)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모든 자재는 자재 품절,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및 모형은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동별로 향, 조망이 다르며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미전시된 주택형의 경우 계약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미전시된 주택형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함(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
· 청약 및 계약 전 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내용과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현황(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샤시,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사업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아파트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피뢰침,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외부 디자인계획,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공동장소인 광장,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문고, 휴게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체력단련실,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등 각 부대복리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개별 발코니 창호 설치 시 골조 벽체부분은 단열 미비로 결로가 유발될 수 있으니 해당 부위에 결로방지 단열시공을 권장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단, 입주지정기간 중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시부터 부과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시공 중 천재지변,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정책 변경,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부담계획 구역에 위치하여 용인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공사중지 및 사용검사 불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 거주 세대의 중학생은 수지1, 2중학군내 배치가 가능하고, 초등학생은 매봉초에 배치가 가능하나, 향후 개발계획 및 급당인원 변경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사입시행인가변경 포함)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면의 형태 변경으로 인해 동일 주택형의 일부 세대는 다른 세대와 서비스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단위세대 평면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전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본 사업지는 주택법 (2004년 4월 1일)자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

▣ 기타 설계상 주요 고지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위임함.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 [지붕(지붕프레임포함),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외부차별화 구조물 및 마감재, 저층부 석재(석종 및 디테일, 적용부위 포함),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난간의 형태(높이, 디테일포함) 및 재질(색채포함),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외부 승강기, 외부 계단 (실), 옹벽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디자인은 단지 외관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용인시건축조례,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문주, 경비실, 방음벽,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텃밭,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구조물의 위치, 수량 및 형태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음.
- 모형과 카탈로그 상의 CG 배치도는 교통영향평가안으로 작성 되었으며, 사업진행 혹은 인허가 결정사항에 따라 도로의 선형, 폭원, 레벨, 차선 수, 녹지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반조사와 지반시험, 인접대지 건축물(상가 포함)의 옹벽, 지하구조물(설비전기 시설 등)에 따라서 기초구조와 지하주차장의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복리시설, 커뮤니티 등의 구조는 기능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설계, 디자인 등)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합산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 동출입구, 피로티 등의 공용시설 층고와 천장고는 기능개선 및 시공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동통신실, 휀룸, 저수조, 빗물저류조, 열교환실 등의 시설은 기능 개선을 위하여 규모,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고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절골근린공원 관련 사항(공원 출입구 등)은 인허가 및 심의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용인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색채 심의에 따라 단지 외벽의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공통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방음벽 등의 형태,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열주, 도로선형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인허가관청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지역난방을 열원으로 사용하며, 단지 내 가스배관 인입여부 및 세대 가스배관 시공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및 부대복리 시설의 창호, 마감재 종류 및 디테일, 기계 및 전기 설비 시스템 등의 입면 사항은 현장여건 및 미관개선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포함)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주동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항공 장애등이 옥탑 및 중간층에 설치되어 야간(항시), 주간(시정 5,000m 미만 시) 작동됨.
- 본 사업지와 LG2차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방음터널은 반폭만 설치되어 있고,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음.

배치

- 배치상 인접한 세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다음 세대는 인접한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102동 전면, 103동 전면, 105동 전면, 106동 측면, 107동 전면, 108동 전면 등으로 계약 전 직접확인 요망)
- 다음 세대는 인접한 어린이집 및 상가,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101동, 102동, 104동, 등으로 계약 전 직접확인 요망)
- 쓰레기 분리수거소 주변에 악취, 소음,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시설(지하층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동통신실, 휀룸, 저수조, 열교환실)의 공조를 위한 DA주변에는 소음, 냄새,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DA의 위치 및 규모,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난간대의 재질 및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다음 세대는 단지의 조성 레벨로 인하여 데크층으로 주동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음.(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 등으로 계약 전 직접확인 요망)
- 다음 세대는 보육시설이 면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2동 3호 라인)
- 다음 세대의 코어(엘리베이터,계단실)은 자연환기 및 채광이 불가능함.(103동 1,2호라인, 104동 3,4호라인)
- 104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시야 간섭 및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주동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아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피로티 평, 입면 계획(마감재,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및 지하층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폭과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옥탑 및 옥탑프레임, 옥상조형물의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탑프레임 및 옥상조형물의 형태/마감재/재질, 입면문양, 측벽조형물형태/마감재/재질, 측벽문양, 코아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형태/마감재/재질) 및 색채는 상세계획에 따라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아파트 동은 단지외부 일조권확보를 위해 옥탑구조물의 형태가 상이하거나 없을 수 있음.
- 외부 입면 돌출 장식물에 의해 일부 채광 및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될 수 있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지하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아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각 동 주방, 욕실, 발코니, 복도 등)
- 선큰과 인접한 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인승 및 대수, 성능은 동별, 세대 타입별 상이할 수 있으며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지하주차장에서 각동 지하엘리베이터 홀까지 약20m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음.
- 다음 세대는 주동 출입구로 인하여 후면부에 일부 채광 및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음.(102동 1층, 103동 1층 등으로 계약 전 직접 확인 요망)
- 84A, 101B 타입의 경우 침실이 계단과 접해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102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등으로 계약 전 직접확인 요망)
- 84B 타입의 침실1이 엘리베이터에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등으로 계약전 직접확인 요망)
- 105동, 106동은 3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1대가 설치됨.

부대시설

-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 시설 외관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변경,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에 실내용 헬스운동기기와 붙박이형 가구(신발장, 락커 등) 설치가 포함(테이블, 의자, 소파 등 이동식 가구와 비품은 제외)되며, 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붙박이형 가구의 형태는 카달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실외기실, 배기탑 모양 및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휀스는 설치되지 않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미지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시설, 기계실, 공조실과 인접한 동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육시설, 경로당, 문고의 입면형태, 마감재, 재질, 색상 등은 인허가 및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동의함.

조경

- 단지 조경(식재, 시설, 포장 포함)의 형태 및 위치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설계변경 처리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음
- 녹지면적 및 각 공간별 형태, 면적 등은 분양 후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 및 대관협의, 상품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상부에는 옥상녹화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부속동 상부는 세대 내 미관개선을 위하여 녹화 또는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주차구획의 개소 및 위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 비율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형 및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위치를 한정 할 수 있음.
- 지상주차 45대(장애인용 12대)가 설치되어 주변동에 소음, 빛 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8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다른동에 비해 협소함.
- 101동, 107동, 108동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2층에 모두 접하며, 나머지 동은 지하1개층만 접함.
- 동별로 지하주차장 접근성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주출입구/문주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의 상세 계획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출입구 문주 및 램프 지붕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통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하부등) 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될 수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일부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현장 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고층부의 세대는 배관등의 기능을 위하여 일부층의 층고가 상향(천장고는 변경 없음)될 수 있음.
- 결로방지를 위하여 비확장 발코니(세탁공간, 실외기공간 등)에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외기 공간은 그릴일체형 환기구 설치)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 개수대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 평면(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기구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구,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 함.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 거실 등 복보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 세대 내부 타일 및 석재의 나누기 또는 디자인 및 시공성에 따라 시공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구는 제조사별로 색상, 구성, 세부 디테일이 다르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을 참조하시기 바람.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또는 드레스룸에 외기에 접하는 창이 생기는 타입 일부세대는 창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이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해당 실 창호 및 커텐박스 유무 또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선반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우물천장은 조명 및 에어컨 실내기 설치로 일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설치되는 렌지후드의 종류에 따라 배기구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상부세대의 배기구가 당세대 창문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창호유무 또는 옵션에 따라 시스템가구의 형태 및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
-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발코니/실외기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 및 인접한 실외기 출입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 샤시는 창호도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나,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창호종류 및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사양,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 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측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다용도실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창호의 재질 및 사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장비 및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비확장부위의 결로방지단열재는 설치되지 않음. (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질 수 있으므로 확장 및 비확장 공간 등은 입주자 스스로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함)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위층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경우 비확장 세대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이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를 비확장 세대와 접합 확장세대의 바닥 및 벽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벽체에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창호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계단실 방화구획 조건 충족을 위해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계단실의 창은 개폐가 안되는 고정형으로 설치됨. (옥탑창 제외)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창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침실 등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외부 창호는 도면과 달리 사업주체 요청(제품 지정) 및 내풍압의 구조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프레임의 폭, 두께, 모양, 개폐방법(입면분할 형태, 방법 및 크기), 개폐창의 크기, 칼라, 재료, 사양 등]

전기/설비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신발장 가구)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함.
-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
-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
- 세대 환기용 디퓨져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가스배관 및 가스 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위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의 싱크대에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구 등의 위치는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음.
- 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RD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옵션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명기구, 배선기구, 세대단자함의 위치는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식탁등의 경우 인테리어 최적의 위치로 식탁을 배치하고 그 중앙에 설치됨. 이에 따라 위치변경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기타

- 디자인을 위한 입면변화가 적용되어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의 형태, 개소 및 각 실의 확장면적이 다를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을 위해 입면변화, 돌출 구조물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주변 세대의 채광 간섭 및 우수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의 단열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벽체와 천장의 돌출부 발생 및 우물천장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시공되어, 창호개방시 인근세대로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냉매매립배관 및 박스의 위치는 현장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의사항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②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④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⑤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감리 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축	단건축사사무소/호안건축사사무소	1,351,560,228	
전기	한산엔지니어링(주)	146,300,000	
전기·소방·통신	지화엔지니어링(주)	141,9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단위 : 원)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255,528,000,000	0000

※ 상기 보증금액은 실 분양총액을 기준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구분	주택 또는 단지 내 상가
제1조제4호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 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 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 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 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 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 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 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 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 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 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 "갑", 위탁자 케이에스케이펀드(주) 및 시공사 "병" 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을"은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케이에스케이펀드(주)가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케이에스케이펀드(주)이고, 대한토지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케이에스케이펀드(주) 및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별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 의무는 위탁자 케이에스케이펀드(주)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케이에스케이펀드(주)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케이에스케이펀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수분양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수탁자)	위탁자	시공회사
상 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 1492513	110111- 1671505	110111- 0014764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분양문의 : ☎ *1644- 9322*)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www.lottecastle.co.kr* / *www.park9.lottecastle.co.kr*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견본주택 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